

(第12回-都市整備第4次)

<p>지금까지 審査한 바를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p> <hr/> <p>(參 照)</p> <p>○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공 원 명</th> <th rowspan="2">위 치</th> <th colspan="3">면 적(m²)</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기 정</th> <th>증·감</th> <th>변경후</th> </tr> </thead> <tbody> <tr> <td>관악산 자연공원</td> <td>관악구 신림7동 산101번지일대</td> <td>12,407,058</td> <td>감) 140,603</td> <td>12,266,455</td> <td>일부해제</td> </tr> </tbody> </table> <p>※①재개발구역(171,500m²)내 공원면적 153,683m²중 140,603m² 해제(91%) ②재개발구역 공원해제내 건물수:2,548동, 공원존치내 건물수:21동</p> <p>4. 추진경위</p> <p>○93. 6. 7 도시계획변경 공람공고(관악구공고 제105호) -자연녹지(124,757m²)→일반주거지역 변경</p> <p>○94. 2.23 시의회 의견청취</p> <p>○94. 3.15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통과)</p> <p>○94. 7.11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서공고 제231호)</p> <p>○94. 7.14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공람공고(관악구공고 제158호)</p> <p>5.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사유</p> <p>○당해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60년대 도심지 철거민 이주정착지로서 도시기반시설미비 및 각종 재해위험이 내포되어 동 일대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p> <p>○구역내 저축되어 있는 공원용지를 거주민 수용 주택건설지 범위내에서 일부 해제하고 잔여 공원용지는 산재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을 정비하여 구역내 건립하는 아파트에 수용한 후 공원기능을 회복하고자 함.</p>	공 원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후	관악산 자연공원	관악구 신림7동 산101번지일대	12,407,058	감) 140,603	12,266,455	일부해제	<p>도시계획시설(공원용지)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1994.11. 8 서울특별시장</p>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p> <p>2. 제안이유 : 신림1주택개량재개발구역입안지내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hr/> <p>○委員長代理 申龍吉 議案番號 1178, 城東區 下往十里 1039番地 一帶 下往 第1住宅改良再開發區域 變更指定에 대해 意見 있으시면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異議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지금까지 審査한 바를 市長이 제출한 原案대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p> <hr/> <p>(參 照)</p> <p>하왕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시의회 의견청취 1994.11.3. 서울특별시장</p> <p>1. 건 명 : 하왕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지정</p> <p>2. 제안이유 : 하왕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이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저 함.</p> <p>3. 주요요지</p>
공 원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후												
관악산 자연공원	관악구 신림7동 산101번지일대	12,407,058	감) 140,603	12,266,455	일부해제											

○주택개발제한구역변경지정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하왕제1	성동구 하왕십리 1039번지일대	78,317	107,104	증28,787	추가지정

○추가지정구역 현황

- 면적 : 28,787m²(사유지 17,918m², 국공유지 10,869m²)
- 건축물 : 337동(유허가 72동, 무허가 265동)
- 가구수 : 811세대(가옥주 290세대, 세입자 521세대)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 주민동의율 : 68.4%

4. 추진경위

- 1973.12. 1 : 구역지정
- 1993. 8.16 : 사업계획변경결정
- 1994. 9.16~ 9.30 : 주민공람(공람결과 : 김영철외 111명 재개발구역 지정 반대)

5. 지정사유

본 구역은 1973.12.1 구역지정되고 1993. 8.16 사업계획변경결정되어 4개지구로 분할, 제1지구는 시행완료하였고 제2지구는 시행중에 있으며 제3지구는 사업시행인가 처리중에 있으나 제4지구는 구역이 협소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이 곤란하였으나 동지구와 인접한 노후불량주택밀집지역 주민들로부터 재개발구역에 편입을 요구함에 따라 관할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재개발구역 변경결정 신청

3. 주요요지

○주택개발제한구역지정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응암 제6	은평구 응암동 178번지일대	21,566.07	신규지정

○구역현황

- 면적 : 21,566.07m²(국·공유지 3,483.85m², 사유지 18,082.22m²)
- 건축물 : 159동(유허가 143, 무허가 16)

이 있었기 이 지역 일대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코저 함.

○委員長代理 申龍吉 議案番號 1202, 恩平區鷹岩洞 178番地 一帶鷹岩 第6住宅改良再開發區域 指定에 대해 意見 있으시면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지금까지 審査한 바를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照)

응암 제6주택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제출년월일 : 1994.11.24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건명 : 응암 제6주택개발제한구역지정(신규)
2. 제안이유 : 응암 제6주택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